

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

(교부용)

이 「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」(이하 “약관”이라 합니다)은 (주)하나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 합니다)과 이용자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(이하 “결제제도”라 합니다)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.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에 비치하고, 이용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제1조 (적용범위)

이 약관은 은행과 이용자 사이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발행, 결제 및 담보대출 등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되며, 이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 결제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.

제2조 (용어정의)

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“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”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하여 일정 금액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겠다고 발행하는 전자적 지급수단을 말합니다.
- “이용자”라 함은 결제제도를 이용하는 구매기업 및 판매기업을 말합니다.
- “구매기업”이라 함은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 및 용역 등을 구매하고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.
- “판매기업”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재화 및 용역 등을 제공하고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으로 결제 받는 기업을 말합니다.
-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(이하 “외담대”라 합니다)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발행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이 판매기업을 채무자로 하여 취급한 대출을 말합니다.
- “상환청구권이 있는 외담대”라 함은 은행이 판매기업으로부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양도받아 판매기업에게 외담대를 실행한 후 구매기업이 만기도래 한 당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은행이 판매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출을 말합니다.
- “상환청구권이 없는 외담대”라 함은 은행이 판매기업으로부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양도받아 판매기업에게 외담대를 실행한 후 구매기업이 만기도래 한 당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은행이 판매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출을 말합니다.
- “미결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”이라 함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의 결제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결제되지 않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말합니다.
- “전자적 장치”라 함은 인터넷뱅킹, 펌뱅킹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, 결제 및 담보대출 등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컴퓨터 등의 장치를 말합니다.
- “접근매체”라 함은 결제제도 이용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.
 - 은행이 제공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
 - 「전자서명법」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
 - 은행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
 -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
 -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
 - 기타 은행과 이용자가 합의한 방식에 의한 전자적 정보
-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「전자금융거래법」, 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, 「B2B업무규약」 및 동 「시행세칙」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제3조 (결제제도 이용계약의 체결 및 변경)

- 이용자가 결제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은행에 결제제도 이용신청을 해야 합니다.
- 제1항에 대한 은행의 승낙이 있는 경우, 이용자는 은행과 결제제도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니다.
- 이용자는 결제제도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 ·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이용자는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, 이용자 본인이 서면으로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
제4조 (결제제도 이용계약의 해지)

- 이용자가 결제제도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은행에 해지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.
-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기발행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및 기취급된 외담대에 대하여 당해 전자방식 외상 매출채권 결제 및 외담대 상환시까지 이용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.

제5조 (이용시간)

- 은행은 이용자의 이용시간을 은행 홈페이지 또는 접근매체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.
- 이용시간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 본점 및 영업점, 게시 가능하거나 기타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합니다. 다만, 시스템 장애복구,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.



제6조 (수수료)

은행이 수수료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, 「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」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.

제7조 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발행 및 용도)

구매기업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기업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에 의한 재화 및 용역 등의 구매대금 결제용도로만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, 만기를 90일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. 다만, 2020.5.29. 까지는 150일 이내, 2021.5.29. 까지는 120일 이내로 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.

제8조 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발행절차)

- ① 구매기업은 은행과 제3조에서 정한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.
- ② 구매기업은 판매기업의 결제제도 이용계약 여부를 전자적 장치에서 확인 후 은행이 정한 시간까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③ 은행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내역을 판매기업이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.
- ④ 구매기업은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이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상 납품대금의 지급수단일 경우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을 물품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하며, 만약 60일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판매기업에 지급해야 합니다.
- ⑤ 구매기업은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이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일 경우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하며, 만약 60일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판매기업에 지급해야 합니다.

제9조 (결제방법)

- ① 은행은 만기 도래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내역을 구매기업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.
- ② 구매기업은 만기 도래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해당금액을 은행이 정한 시간까지 입금하여야 합니다.
- ③ 은행은 제2항의 입금금액을 구매기업 결제계좌에서 예금청구서 없이 출금하여 판매기업 계좌에 입금하거나 판매기업의 외담대를 상환하기로 합니다.

제 10조 (결제자금 부족 시 결제절차)

- ① 같은 날 만기 도래된 외상매출채권이 여러 건인 경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결제순서는 구매기업과 은행이 체결한 약정에 따릅니다.
- ② 전항의 약정에 따라 결제순서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구매기업의 동일한 판매기업에 대한 지급채무의 결제순서는 구매기업이 정하는 바를 따릅니다.
- ③ 전2항에 따라 결제순서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판매기업의 동일한 구매기업에 대한 수취채권의 결제순서는 판매기업이 정하는 바를 따릅니다.

제 11조 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정보집중)

- ① 은행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발행, 취소, 변경 및 미결제 정보 등을 금융결제원에 집중하여 은행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.
- ② 본 약관의 체결에 의하여 제1항에 포함된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.

제 11조의 2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미결제 기업에 대한 거래정지)

-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미결제 처리합니다.
 1. 예금부족 또는 지급자금의 부족
 2. 무거래
 3. 사고신고서 접수(계약불이행, 피사취, 합의불가)
 4. 법적제한
- ② 은행은 제1항의 미결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인인 구매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거래정지를 하며, 그에 따른 거래정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.
 1. “예금부족”미결제로서 은행으로부터 입금통보가 없을 때 : 미결제일로부터 제3영업일
 2. “무거래”로 미결제된 때 : 미결제일의 익영업일
 3. “사고신고서 접수” 또는 “법적제한”중 지급정지가처분명령의 송달로 인한 미결제로서 사고신고 또는 지급정지가처분 담보금의 입금통보가 없을 때 : 미결제일로부터 제3영업일
 4. 모든 은행을 통하여 1년간 6회 이상 입금통보된 “예금부족”, “사고신고서 접수” 또는 “법적제한” 중 지급정지가처분명령의 송달로 인한 미결제가 있을 때 : 미결제일의 익영업일
- ③ 제2항의 거래정지를 받은 발행인은 거래정지일로부터 만 2년간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.
- ④ 기타 미결제 사유 경합시의 처리, 거래정지 및 미결제 구제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금융결제원 「B2B업무 규약」 및 동 규약 「시행세칙」에 따릅니다.

제12조 (거래내용의 확인)

- ① 은행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은행은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 형태로 이용자에게 교부하기로 합니다.
- ③ 이용자는 요청한 거래내용과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


제13조 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취소/정정)

- ① 구매기업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취소/정정을 당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전 은행영업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판매기업이 외당대를 취급한 경우에는 당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취소/정정이 불가합니다.
- ③ 구매기업은 기 발행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취소/정정시 판매기업의 동의를 받기로 합니다.
-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판매기업의 동의를 생략 하기로 합니다.
 1.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 당일에 취소/정정하는 경우
 2.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암류 또는 가암류 결정문이 송달된 경우
- ⑤ 구매기업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취소/정정에 관한 판매기업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판매기업 앞 취소/정정 통지에 대한 내용증명우편 발송 및 취소신청서 제출시 판매기업의 동의 없이 취소/정정 가능합니다.

제14조 (손실부담 및 면책)

- ① 은행은 구매기업이 전자적 장치를 사용하여 등록한 매매계약내용 등에 관하여는 그 진위를 보장하지 아니하며 구매기업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함으로 인해 발생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- ② 은행은 이용자간에 물품의 배송, 운송, 하자, 반품 등 매매계약 관계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다만,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 은행은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.
- ③ 은행은 이용자가 은행에 제출한 주소(이메일 주소 포함)의 오류기재 등으로 발생한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다만,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 은행은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.
-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9조, 「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」 제8조를 적용합니다.

제15조 (통지의 효력)

- ① 은행이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서면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. 그러나 이메일 주소 등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에 입력된 때를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② 이용자가 제3조 제4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이용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③ 은행이 이용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제16조 (약관 변경)

약관의 변경은 「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」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.

제17조 (이의 제기)

- ① 이용자는 결제제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,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② 이용자가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은행은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.
- ③ 이용자는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은행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.

제18조 (약관적용의 우선순위)

- ①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.
-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「전자금융거래법」,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」, 「전자서명법」,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및 동 법 「시행령」,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및 동 법 「시행령」, 금융결제원 「B2B규약」 및 동 「시행세칙」, 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, 「예금거래기본약관」 및 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」을 적용합니다.

제19조 (준거법)

이 약관의 해석 ·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.

※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
